

『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2월 2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3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3월 10일

제2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일과 가사·자녀 양육 등의 다양한 가족문화와 교육제공에 필요한 가족 친화적 인프라를 조성함과 동시에 가족기능 강화 및 포괄적·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- 위 치 : 구미시 원평동 460-4, 460-5
- 대 상 : 건물 지상3층 / 연면적 1,000㎡
- 기준가격 : 2,300백만원(삼성전자 지정기탁금)
- 사업기간 : 2016년 ~ 2017년

○ 주요시설

- 1층 : 다목적가족체험장(요리실), 맘카페, 사무실
- 2층 : 상담실, 어린이도서관, 언어발달실
- 3층 : 다목적강의실 등

○ 건 축 주 : 구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』 은

-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,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“지방의회 의결”사항으로, 가족행복플라자 건립, 운영은 가족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많은 젊은 도시인 구미시의 정주여건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